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활안정자금 대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근거 마련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83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마련	3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근거 마련	8
※ 참고자료	16
1. 비용추계서 요약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6. 1. 15.
3. 회 부 일: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이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을 수

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체육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및 제28조).

Ⅲ. 검토의견

1.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자금의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u>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u>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대여) ① ----- ----- ----- <u>창업준비, -----</u> <u>취업, 생활안정 등을 -----</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의 대여</u>
4.·5. (생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생계비 등의 자금을 융자하는 지원정책임¹⁾.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²⁾.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25년 예산		총 9,000백만원
지원 내용	유형	긴급생활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한도	최고 700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
	금리	2.5%(연체시 3% 가산)
	상환방법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	요건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이하

1)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 12. (생략)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인원	모수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196,009명('25.6.18.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소득 2,000만원 이하] 26,069명 (예술인의 13.3%, '24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지원 인원	약 1,800명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소득 2,000만원 이하 26,069명의 6.9%) * '24년 지원실적 : 총 1,912명(긴급생활자금 1,779명 / 의료비 41명 / 부모요양비 2명 / 장례비 6명 / 결혼자금 84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예술인과 달리 현재 체육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체육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체육인은 부상, 소속팀 해체 등으로 인해 은퇴 연령이 다른 직종에 비해 빠른 편이며³⁾,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업 체육인도 많은 편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높다고 할 수 있음.

- 「2024년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현업 선수 중 연봉이 전혀 없는 선수는 51.7%에 달하며, 은퇴 후 연봉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선수 및 지도자의 비중 또한 40%를 넘는 상황임.

개정안은 체육인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육인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려

3) 운동선수 은퇴 평균 연령(출처 : 대한체육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나이	23.15	22.57	22.51	22.13	23.6

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용자 정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⁴⁾이나 그 시행령에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로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를 명시하고 있음⁵⁾.

4)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7.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 11의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5. (생략)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기은퇴, 높은 부상확률 등 체육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체육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반해, 기획예산처는 ① 정부의 융자 지원은 민간의 개입이 어려운 분야 등 정책적으로 국가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되어야 하고, ② 예술인 생활안정지원과 달리 동 개정안은 은퇴한 체육인까지 포괄하며, ③ 취약계층 체육인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지원 중인 취약계층 대출지원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859호)이 2025년 12월 4일에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활용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이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24조의2 신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4조의3·제24조의4 및 제28조제3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생략)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자료-----

-----.

제24조의2(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 제13조 및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체육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 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

<신 설>

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意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

<신 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 략) <신 설>	<u>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4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 제25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24조 또는 제24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u> 제28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u>
---	---

다. 검토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⁶⁾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6)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인적사항·소득·재산 등)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고 있음.

「예술인 복지법」⁷⁾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수혜자의 수급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

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7) 「예술인 복지법」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의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소득·재산·출입국·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체육인 복지법」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 등을 위해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② 정보주체로부터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③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④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육인 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체육인들의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체육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체육인 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8조제3호는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예술인 복지법」⁹⁾은 유사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② 현행 법¹⁰⁾은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제재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및 제공요청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7

10) 「체육인 복지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참고자료

1. 비용추계서 요약¹¹⁾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45억 3,500만원(연평균 189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생활안정자금 대여 (안 제13조)	18,907	18,907	18,907	18,907	18,907	94,535	18,907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자금의 대여) 및 안 제18조(전담기관 의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전담기관의 사업에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의 대여”를 추가함	재량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보다 세부적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의안정보시스템 비용추계서 원문 참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Q6Y0Y1W1V5W0U9U4C9D0B4C7A2B8